
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1.

발 의 자 : 강득구 · 황운하 · 박홍근
서삼석 · 박홍배 · 송재봉
김상욱 · 장종태 · 위성곤
이용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 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,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.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, 충북 · 대구 · 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).
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관측시설의 구축”을 “관측시설의 조밀도, 관측시설의 구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기상청장은 매년 기상관측장비의 설치, 고장 대응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고, 이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제8조(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<u>관측시 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</u> (이하 “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 작성지침 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관측시설의 조밀도, 관측시설의 구축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기상청장은 매년 기상관측 장비의 설치, 고장 대응 및 유 지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실시 하고, 이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